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11월 22일

도시·교통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3년 11월 10일

나. 제안자: 이종숙 의원 외 6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1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
도시·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·의결(2023.11.22.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이종숙 의원)

### □ 제안이유

-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방문 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# □ 주요내용

가. 국가유공자 등을 정의함(안 제2조)

나. 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을 규정함(안 제5조, 제6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나. 협조부서: 주차관리과

다. 입법예고(2023. 11. 10. ~ 11. 14.) 결과: 의견 없음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배금택)

#### 가. 제정 취지

-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 선양 및 예우받는 보훈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,

#### 나. 주요 제정내용

-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  - 국가유공자 등의 용어를 정의함

#### 【“국가유공자 등”의 대상자】

1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
3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
4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
5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
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 본인
7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

○ 적용범위 규정(안 제4조)

- 국가유공자 등 본인<sup>1)</sup>이 차량에 탑승하여,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함.

○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(안 제5조)

- 강서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주차장
- 구가 설치한 노외·노상주차장

○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기준 규정(안 제6조)

- 주차단위 구획의 총 수가 5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, 1면 이상 설치
-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한곳에 설치(접근성, 이동성 확보)
- 바닥면을 표시하고,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 설치
-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비용은, 시설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

1) 강서구 거주 국가유공자 현황(본인만 해당, 유족 제외)

(단위: 명)

합 계	독립유공자법	국가유공자법						보훈보상자법		참전유공자법	고엽제후유의증법	5.18민주유공자법	특수임무유공자법
	독립유공자	전공상군경	무공보국	재일학도	4.19혁명	공상공무원	특별공로자	재해사망부상군경	재해사망부상공무원	참전유공자	고엽제후유의증	5.18민주유공자	특수임무유공자
3,165	0	798	281	0	6	19	0	66	1	1688	280	19	7

(자료: 서울지방보훈청)

○ 우선주차구역의 이용(안 제7조)

- 우선주차구역 이용 시,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<sup>2)</sup>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을 명시

○ 위반차량의 조치(안 제8조)

- 우선주차구역의 이용대상자가 아닌 경우,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을 규정함.

○ 상이등급 판정자에 대한 특례(안 제9조)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041호(2012.07.01. 시행)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<sup>3)</sup>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

2)(통합)국가보훈 등록증

※ 2023년 달라지는 보훈제도 중 하나로, 대상별로 각각 발급되던 15종의 각종 국가유공자 관련 증명에 '국가보훈등록증'으로 통합되어,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급되고 있음.



- 3)제73조의2(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)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·제6호·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(이하 이 조에서 "사망 또는 상이"라 한다)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(公傷基準)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,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. 다만,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·제5조·제7조·제10조·제78조·제79조·제80조제1항 및 제81조를 준용한다.
- 제11041호(공포번호)에 해당조문 삭제됨 <2011. 9. 15.공포, 2012. 7. 1.시행>

## 다. 종합 의견

- 본 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것으로,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5조<sup>4)</sup>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, 예우 받는 보훈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는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바,
  - 본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보훈 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,
- 향후,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##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 6. 토론요지: 생략

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## ※ 붙임 관계법령 1부.

- 4)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자원(財源) 조성 노력하여야 한다.

## 참 고

## 서울시 타 자치구 조례 관련 현황

### □ 우선주차구역 이용대상 및 설치기준

(2023. 10월 기준)

자치구	조례명	대상	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	제정일
강서구	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국가유공자 등	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1면 이상 설치	
관악구	관악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국가유공자 등	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	2023. 9. 25.
금천구	금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	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	2023. 7. 20.
성동구	성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		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	2023. 9. 21.
성북구	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		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	2017. 10. 12.
용산구	용산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		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	2017. 7. 7.
중구	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		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	2023. 7. 25.

**□ 국가보훈 기본법**

-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**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**

**제2조(예우의 기본이념)**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(戰歿軍警)과 전상군경(戰傷軍警)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(龜鑑)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,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(榮譽)로운 생활이 유지·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.

**제3조(정부의 시책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·발전시키며,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.